해남군 북평면 공고 제2020-2호

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민방위기본법」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1. 공 고 명: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0. 3. 3. ~ 2020. 3. 23.
3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

성 명	주 소	위반사항	예정된 처분	비고
여*민	전남 해남군 북평면 이진1길 1*	2019년 민방위교육·훈련 불참	과태료 부과 (100,000원)	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금액 20%감경
노*호	전남 해남군 북평면 천태산길 9*-*6	2019년 민방위교육·훈련 불참	과태료 부과 (100,000원)	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금액 20%감경

4. 의견제출기간: 2020. 3. 3. ~ 2020. 3. 23.
5. 공시송달 내용

가. 대상자께서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3월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 내역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의견제출 기간까지 자진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금액을 20%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평면 민원복지팀(☎061-531-3241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3월 3일

북 평 면 장